



[2019. 7. 16.] [356 , 2019. 7. 8.,]

() 044 - 200 - 5920, 5921

1 () 「 」

2 () 「 」 (" ") 2 5 (8) "

. < 2011. 8. 29., 2013. 3. 24., 2015.

10. 2.>

- 1.
- 2.
- 3.
- 4.
5. (修理造船)
6. (浚渫土) (投棄)
- 7.

2 2() 5 4
(" ")

1. 5 1
2. 7 1

1. 5
- 2.
- 3.

[2019. 7. 8.]

3 () 8
6 1 . < 2013. 3. 24.>

4 (가) 「 」 (" ") 10 1 가
1
10 2 1 " (圖書) .<

2013. 3. 24.>

1. 5,000 1
- 2.
3. ()
4.
10 2 5 " " 9 6
가 .< 2019. 4.

4.>

- 1.

2. 가 5 2 5

10 3 가 2 .<
2019. 4. 4.>

9 3 3 " " .
, 10 3 . 1 .<
2013. 3. 24., 2017. 6. 27., 2019. 4. 4.>

- 1. :
- 2. :
- 3. :
- 4. :

5 () 9 6 11
1

가 .< 2013. 3. 24., 2019. 4. 4.>
1

가 .< 2013. 3.
24., 2017. 6. 27.>

- 1. 10 1 2 4
- 2. 4
- 3. 가
- 4. 가
- 5. 1 4

2 가 1 가 10 2
. < 2017. 6. 27., 2019. 4.

4.>

- 1. <2019. 4. 4.>
- 2. <2019. 4. 4.>
- 3. <2019. 4. 4.>

9 7 " , " ,
. < 2013. 3. 24., 2017. 6. 27., 2019. 4. 4.>

- 1. 4 5
- 2.

. 가 가 6
. < 2017. 6. 27.>

5 .
. 가 .< 2013. 3. 24., 2017. 6. 27.>

6 () 9 8 . < 2019. 4. 4.>
1. (,)

- 2.
- 3.
- 4.
- 5.

6.

7 () 13 1 4

14 2

5

8 () 11 " "

. < 2013. 3. 24., 2017. 6. 27., 2019. 4. 4.>

1. (" ")

가

2. 1 가 가

가

1 2

가

2 .< 2019. 4. 4.>

9 () 12 2

6

. < 2015. 10. 2., 2017. 6. 27.>

1. ()

2. ()

3.

4.

5. (15 1 가)

6. (15 1 가

「 가

」 70

72

)

12 3

7

.< 2015. 10. 2.>

10 () 12 5

.

.<

2015. 10. 2., 2017. 6. 27.>

1

8

.< 2017. 6. 27.>

1.

2.

11 () 18 1 3

"

"

1. (貨主)

2.

18 1 3

"

"

1. (「 」 342 2) (「

」 2 3

)가

2. 가 , , 가

[2015. 12. 31.]

11 2(가) . 18 3 가 (「
가 가 」 2 4 가 .)
10 . < 2019. 7. 8.>

1. 가

2.

3. 가

4. 가

5. 가

6. 가 [가 () 가 가
]

7. 가

가 「 가
」 33 가 . < 2019. 7. 8.>

5 , 가 가 2
가 가 2

가 . < 2019. 7. 8.>

1 3 가

. < 2019. 7. 8.>

[2019. 4. 4.]

12 () 19 1 6 " . < 2013. 3. 24., 2019. 4. 4.>

1.

2.

3. 가

12 2() 19 3 3 "

1.

2.

[2019. 4. 4.]

12 3(가) 20 1 가
8 2 가

1.

2. 1,200 1

[2019. 4. 4.]

13 () . . < 2017. 6. 27.>

14 () 23 1 9 .
 1 ()
 5,000 1)
 1.
 2.
 3.
 4.
 5.

. < 2017. 6. 27.>

14 2(") ") ") 29 3 1 ()
 ") ") ") 7 11
 1
 ") ") 2 1 3 가 ")
 ") 8 1
 ") (3 ")
 ") 8 1 4
 ")
 ") 13 1 2 (1 25)
 , 13 1 3 4 ") 7 4
 8 1
 3 ") 8 1 ")
 ") 13 4 ") 8 2
 .
 29139 2 4
 ") 13 4 1
 ") 19 3 2 3
 ") 9 2 2
 6 ") 8 1 (3)
 8 1 ") 13 1 2
) 2 6 (前後) 3
 1 7 ") 7 11

[2018. 9. 5.]

[:2019. 9. 5.] 14 2 2 , 14 2 3 , 14 2 4 , 14 2 5 , 14 2 7 (3)

15 () 30 6 100 3 . < 2015. 10. 2., 2019. 7. 8.>

1 . < 2017. 6. 27.> 20

16 <2015. 8. 4.>

17 <2015. 8. 4.>

18 <2015. 8. 4.>

19 <2015. 8. 4.>

20 () 42 3 15

. < 2013. 3. 24.>

21 () 50 1 " ,가 , , ,
, . < 2013. 3. 24.>

22 () 48 4 . < 2012. 4. 13.>

1. . . .
2. . . ,
3. .
4. .
5. , .
- 6.
- 7.
8. .

1 . 가

. < 2013. 3. 24.>

23 () 64 1 16

24 () 69 1 17 .

25 () 61 2 18 .

26 () 61 5 19 .

27 () 73 2 6 " " (遊水池)

. < 2013. 3. 24.>

27 2() 71 2 . < 2018. 9. 5.>

. 71 19

2 . < 2017. 6. 27.>

[2015. 10. 2.]

28 () 75 2

20

75 3 . . 가

21 가 .

75 5

22

29 () 81 2

23

30 () 83 3

24

31 (가) 87

가

100 20

100 20

가

「 가 」 2 1 6

가 . < 2014. 12. 31.>

1 27 1 7

「 가 」 . < 2017. 6. 27.>

1 가 25 가

가

< 2017. 6. 27.>

32 () 85

26

33 () 93

1. 9 2 가

2. <2015. 8. 4.>

1 5 (1 1 가 4) ,

. < 2013. 12. 30.>

2 ,

. < 2017. 6. 27.>

34 ()

3 (

3)

1. 4 가: 2017 1 1

2. 7 : 2017 1 1

3. 8 : 2017 1 1

4. 28 : 2017 1 1

5. 31 가 : 2017 1 1

[2017. 1. 2.]

< 187 ,2009. 12. 14.>

1 ()

2 ()

3 ()

가 가

8

2

4 () 「
」 13 19
1 3 5

5 ()
4 1 " 「 」 20 2 1 " " 「 」 26 1 " .
2 " 「 」 " " 「 」 가 "

2 " 「 」 2 6 " " 「 」 2 5 " .
25 1 , 62 2 (4), 133 1 " 「 」 2 6 " " 「 」 2 5
"

54 1 2 " 「 」 2 " " 「 」 2 2
3 "

64 2 " 「 」 1 " " 「 」 2 2 "

7 " 「 」 " " 「 」 "

1 " 「 」 26 " " 「 」 24 " .
3 " 「 」 26 " " 「 」 24 " .
4 " 「 」 28 1 " " 「 」 26 1 " .
6 " 「 」 28 " " 「 」 26 " .
7 " 「 」 28 " " 「 」 26 " .
9 " 「 」 30 2 " " 「 」 28 2 " .
10 " 「 」 30 " " 「 」 28 " .

6 () 「 , 「
」 가
「 」, 「 」

< 350 ,2011. 4. 11.> ()

< 375 ,2011. 8. 29.>

1 6 2012 1 1

< 456 ,2012. 4. 13.> ()

1 () 2012 4 15 . < >

2

3 () ②

③

22 1 5 " " , " "

< 486 ,2012. 6. 27.>

1 ()

2 () 가

17

< 545 ,2012. 12. 5.>

1 ()

2 ()

(,)

1

1

1

, 11

< 1 ,2013. 3. 24.> ()

1 ()

2 4

5 5 () <51>

<52>

2 , 4 2 , 4 , 5 4 ,

8 , 11 , 12 , 16 4 • 6 , 21 27 "

" " " .
 3 , 5 1 , 2 2 , 4 , 6 , 8 1 , 20
 , 22 2 , 15 16 " "
 " " .
 15 16 " " "
 " .
 16 10 " " " "
 <53> <63>

< 60 ,2013. 12. 30.>
 1 ()
 2 () 33 2 , 1 3
 9 2 가 .

< 63 ,2013. 12. 30.>()
 2014 1 1 .

< 84 ,2014. 6. 23.>()

< 127 ,2014. 12. 31.>()

< 155 ,2015. 8. 4.>()
 1 () 2015 8 4 .
 2 7
 8 ()

16 19 .
 33 1 2 34 1 3 .
 1 2 .
 10 14 .

< 161 ,2015. 10. 2.>

1 ()

2 () 27 2

< 174 ,2015. 12. 31.>

< 217 ,2017. 1. 2.>(

)

1 ()

2

< 239 ,2017. 6. 27.>

1 ()

2 () 「 」 8
14 2 2
14 2 2

< 299 ,2018. 9. 5.>

1 () , 14 2 2 5 7 (3
) 2019 9 5

2 () 「 」 8 1
8 1
14 2 1

< 336 ,2019. 4. 4.>

1 ()

2 () 8 2

■ 항만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8. 9. 5.>

항만건설작업선의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검사사항(제14조의2제1항 관련)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만건설작업선의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선박시설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사항을 검사한다.

1.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의 경우 검사사항
가. 항만건설장비의 설계, 구조 부분 및 각 기능 장치의 적합성에 대한 검사
나. 항만건설장비의 호이스트(hoist) 및 감속기 등 주요 구조 부분에 사용되는 재료의 적합성에 대한 검사
다. 항만건설장비의 조립상태, 성능 및 안전장치의 적합성에 대한 검사
2.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경우 검사사항
가. 항만건설장비의 정격부하를 기본으로 하는 부하시험 검사
나. 항만건설장비의 주요 구조에 대한 비파괴시험 검사
다. 항만건설장비의 구조, 성능 및 안전장치에 대한 안전성 확인 및 검사
3. 「선박안전법」 제9조에 따른 중간검사의 경우 검사사항
제2호다목의 검사사항에 대한 검사
4. 「선박안전법」 제10조에 따른 임시검사의 경우 검사사항
제1호의 검사사항에 대한 검사(항만건설장비 중 변경된 부분에 한정한다)

행정처분 기준(제27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공사중지 또는 항만시설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인명 또는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 허가, 법 제10조제2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 허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1층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의 지정,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71조 제1항제1호	허가·지정 또는 승인 취소	-	-
나.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 허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내용을	법 제71조 제1항제2호	경고	공사중지 3개월	허가·승인 취소

위반한 경우					
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수립 신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제1항제2호	경고	공사중지 3개월	공사중지 6개월	
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제1항제2호	경고	항만시설 사용중지 3개월	허가 취소	
마.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를 납부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	법 제71조 제1항제3호	경고	항만시설 사용중지 3개월	허가 취소	
바. 사업시행자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선수금을 받은 경우	법 제71조 제1항제4호	경고	-	-	
사. 사업시행자가 법 제60조의3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을 공급한 경우	법 제71조 제1항제5호	경고	-	-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_____)	
신청사항	항만명	
	공사종류	
	공사목적	
	공사장소	
	공사규모	
	시설이용계획	
	공사기간	- (일간)
	공사방법	
	그 밖의 사항	

「항만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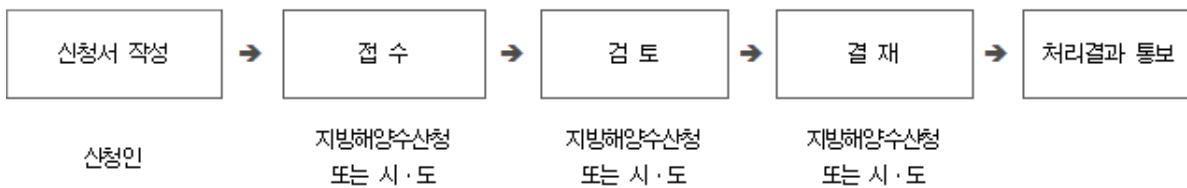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나.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다.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에는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 2.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3.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5. 투자비 보전계획서(「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항만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고 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p>수수료</p> <p>·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000원</p> <p>·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000원</p>
------	---	---

처 리 절 차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항만명	
	공사종류	
	공사목적 및 사유	
	유지·보수 구간	
	공사규모	
	공사기간	- (일간)
	유지·보수 공사에 수반되는 항만시설 의 사용 내역 등 그 밖의 사항	

「항만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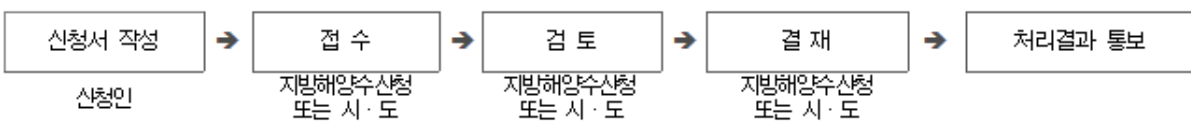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평면도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000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000원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향만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9. 4. 4.>

항만공사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명					
	주소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명					
	공사의 종류					
	항만공사					
	공사장소					
	공사목적					
	공사규모	시설				
		규모				
	시설이용계획					
	공사기간	~		(일간)		
	공사방법					
그 밖의 사항						

항만시설 사용	사용 시설	명칭				
		수량				
		위치				
	사용 목적					
	사용 기간	~		(일간)		

「항만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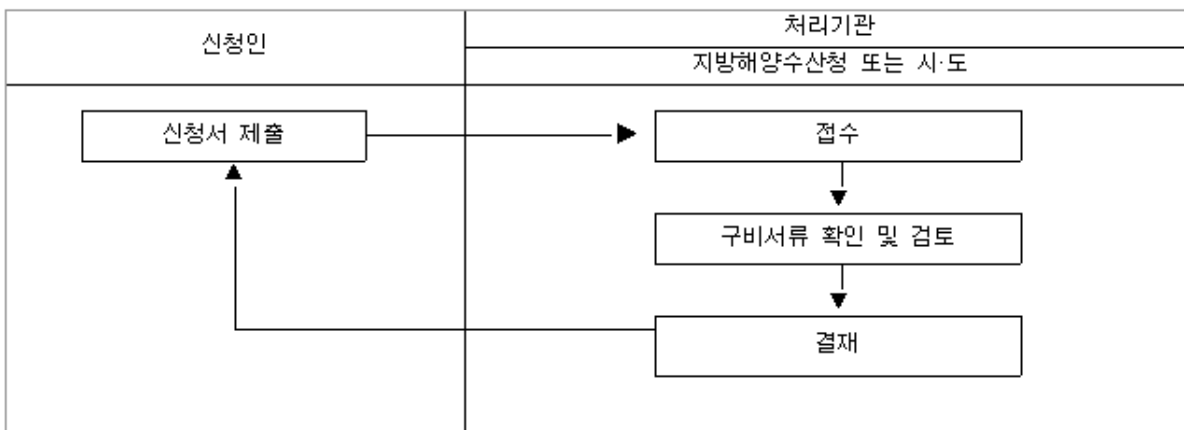
1.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공사실시설계도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자원조달계획을 포함합니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외에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항만공사실시계획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명					
	공사의 종류					
	항만공사					
	공사장소					
	공사목적					
	공사규모	시설				
		규모				
	시설이용계획					
	공사기간	~ (일간)				
	공사방법					
그 밖의 사항						

항만시설 사용	사용 시설	명칭			
		수량			
		위치			
	사용 목적				
	사용 기간	~ (일간)			

「항만법」 제 10조제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조제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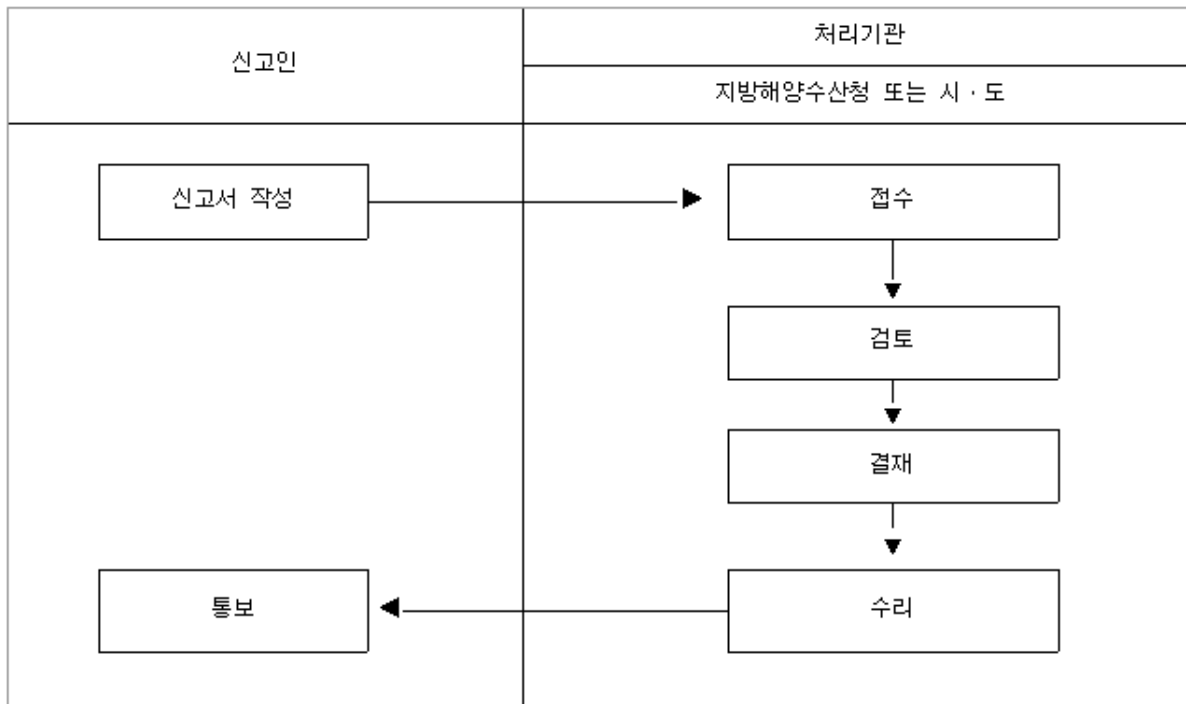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구비서류>

1.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공사실시설계도서
3.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에 따른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항만공사 준공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 명
	주 소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명	
	공사의 종류	
	공사장소	
	공사규모	
	공사목적	
	총공사비	
	공사기간	착공 (일간) 준공
	귀속시설명세	
그 밖의 사항		

「항만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공사 준공확인을 받기 위하여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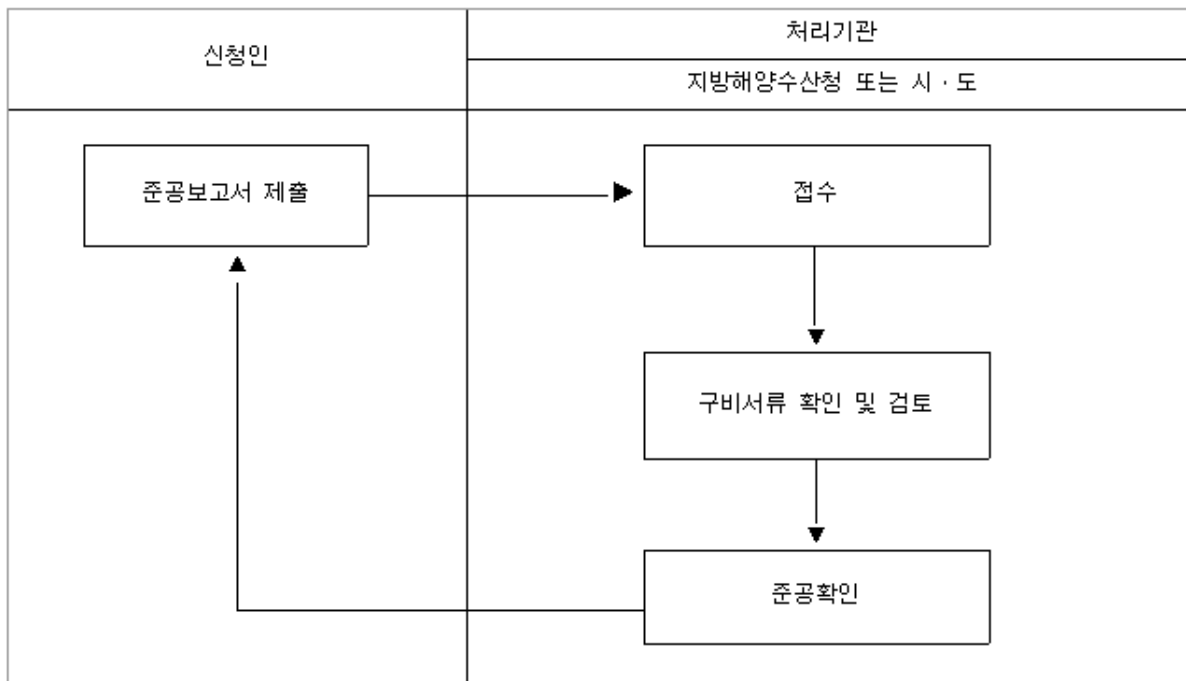
귀하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총사업비 명세서(「항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합니다) 6.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항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만 해당하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와 제72조를 준용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준공확인증명서

시행자 성명:
주소:

귀하가 시행한 항만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확인하고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1. 항만명(위치):
2. 공사의 종류:
3. 공사장소:
4. 공사기간(준공 연월일):
5. 준공시설(귀속 여부):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직인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19. 4. 4.>

국가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시설의 명칭	
	소재지	
	사업허가일	
	사업준공일	
	사용목적	
	사용규모	
	사용기간	

「항만법」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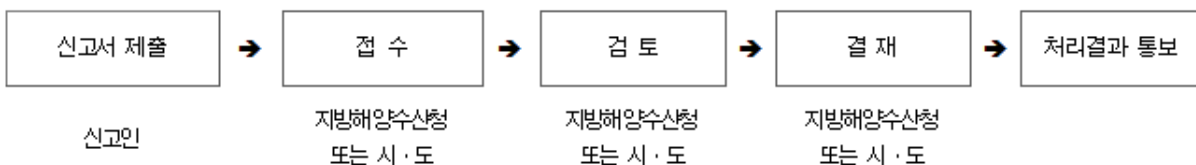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축척 1,200분의 1의 사용위치 실측도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항만대장

항명		위치			항종					개항 연월일					
항계					최대만조 면적 m ²	삭망평균 만조위 m	평균 수위 m	최대 간조위 m	삭망평균 간조위 m	항내 수면적 m ²	정온 수면적 m ²	최대 풍속풍향 m/sec	최대 파고 m		
	접안 시설	명칭	구조	연장										투자액	시설연 도
현재 시설			연도별 준설실적 및 준설계획												
	외곽 시설			년		년		년		년		년		년	
장래 계획	연간자연 매몰량														
	명칭	위치	전체계획		연도별계획										
				사업량	금액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364mm × 257mm [인쇄용]

연도 능력 시설별	현재(년)	종전(시설 변경연도 기준)																	
		년					년					년		년					
		인벽	물양장	진교	물핀등	계	인벽	물양장	진교	물핀 등	계	인벽	물양장	진교	물핀 등	계	인벽	물양장	
1. 하역 (천톤)	능력 실적																		
2. 동시접안 능력(척)																			
	5백톤 미만																		
	3천톤 "																		
	5천톤 "																		
	7천톤 "																		
	1만톤 "																		
	2만톤 "																		
	5만톤 "																		
	5만톤 이상																		
3. 묘박능력(척)		항	항	항	항	계	항	항	항	항	계	항	항	항	항	계	항	항	
	5백톤 미만																		
	3천톤 "																		
	5천톤 "																		
	7천톤 "																		
	1만톤 "																		
	2만톤 "																		
	5만톤 "																		
	5만톤 이상																		

364mm × 257mm [인쇄]

구분 시설별	현재(년)		종전(시설 변경연도 기준)									
	수량(개)	연장(m)	년			년			수량(개)			
			수량(개)	연장(m)	년	수량(개)	연장(m)	년				
4. 안벽 5. 물양장 6. 잔교 7. 돌핀등	동수(동)	면적(m ²)	능력(톤)	동수(동)	면적(m ²)	능력(톤)	동수(동)	면적(m ²)	능력(톤)	동수(동)	면적(m ²)	능력(톤)
	척(대)수	마력(규격)	총톤수(G/T) 시간당능력(T/H)	척(대)수	마력(규격)	총톤수(G/T) 시간당능력(T/H)	척(대)수	마력(규격)	총톤수(G/T) 시간당능력(T/H)	척(대)수	마력(규격)	총톤수(G/T) 시간당능력(T/H)
8. 헛간 9. 야적장 10. 저목장 11. 저탄장 12. 위험물저장장												
13. 예선(이접안용) 14. 예인선(하역용) 15. 기중기선 16. 부선 17. 양곡하역기 18. 고철하역기 19. 컨트리크레인 20. 석탄하역기 21. 시멘트하역기 22. 기중기 23. 지게차 24. 페이로더 25. 그 밖의 하역기												

364mm × 257mm[인쇄용]

산업구분	연도 현재(년)	종전(최근 5년간)			
		년	년	년	년
① 임해도시인구(명)					
② 항만근로자(명) 가. 해상 나. 부두 다. 기타 라. 계					
③ 운수업(화물자동차) 가. 인구(명) 나. 대수(대) 다. 적재능력(M/T)					
④ 수산업 가. 인구(명) 나. 어선(척) 다. 어획량(톤)					

364 mm × 257 mm [인쇄용]

⑤ 임해공장생산량(M/T) 가. 해송량 나. 육송량 다. 계										
⑥ 후방수송화물량(M/T) 가. 철로 나. 공로 다. 항공 라. 내륙수로 마. 계										
⑦ 선박수리시설(척)	건설거	조선대	건설거	조선대	건설거	조선대	건설거	조선대	건설거	조선대
5백톤 미만 3천톤 미만 5천톤 미만 1만톤 미만 2만톤 미만 5만톤 미만 5만톤 이상										

364mm × 257mm[인쇄용지]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5. 8. 4.>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5. 8. 4.>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5. 8. 4.>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15. 8. 4.>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15. 8. 4.>

항만배후단지 지정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요청인	성명	
	주소	

항만배후단지의 명칭						
지정대상 지역	지정목적 및 필요성					
	위치					
	면적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면적				
개발기간						
개발방법						
유치업종						

「항만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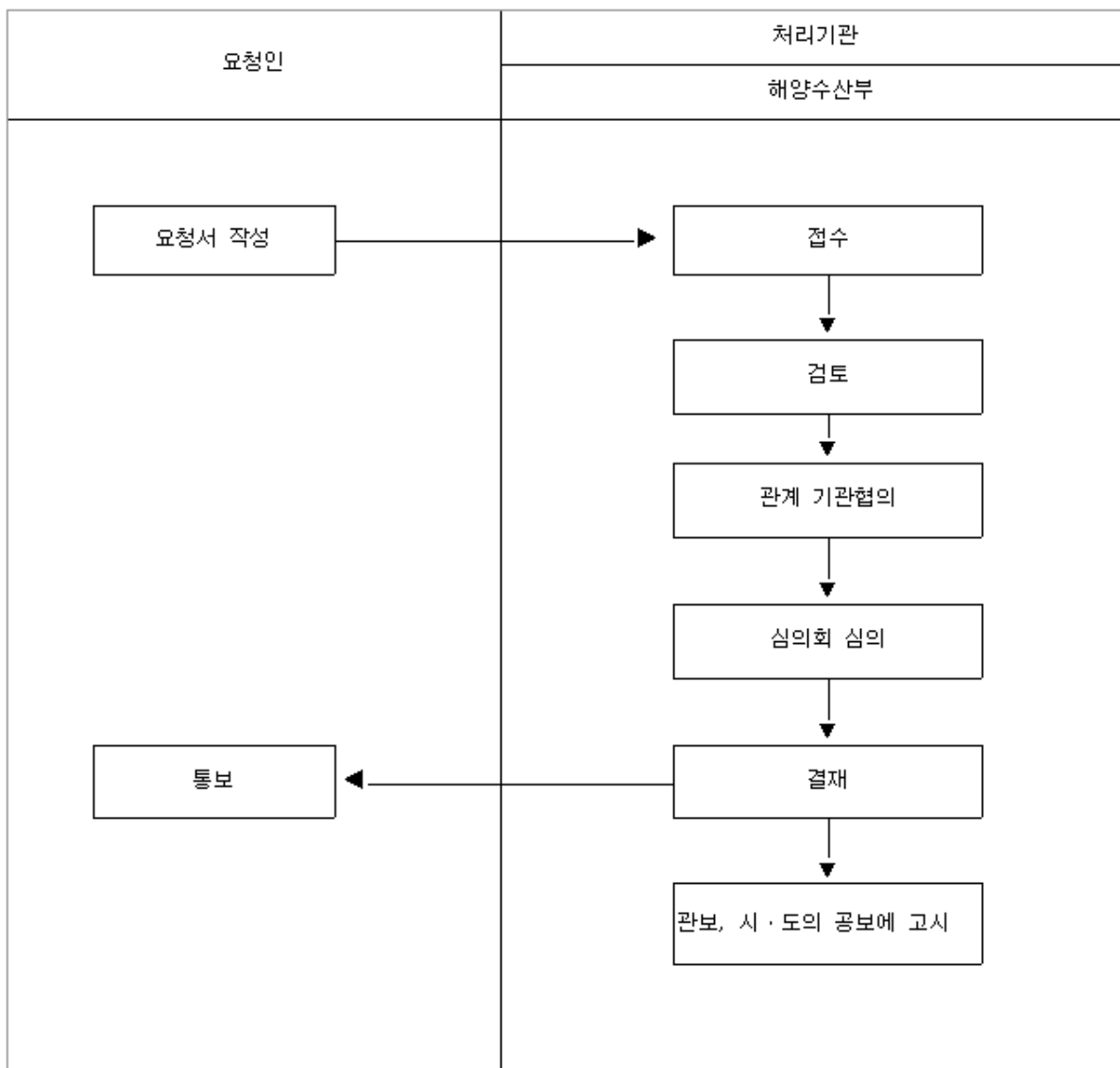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서	수수료 없음
-------------	-----------------------	-----------

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처리절차

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칭									
사 업 위 치					사 업 면 적				m ²
사 업 목 적									
시 행 방 법					사 업 기 간	-			
토 지 이 용 계 획 (m ²)	용도 별								
	면 적								
기 반 시 설 계 획	시설 별								
	규모								
자 금 조 달 계 획	내 자	자기 자금	융자금	소계	외 자	차관	기타	소계	
주요 변경 사항									

「항만법」 제6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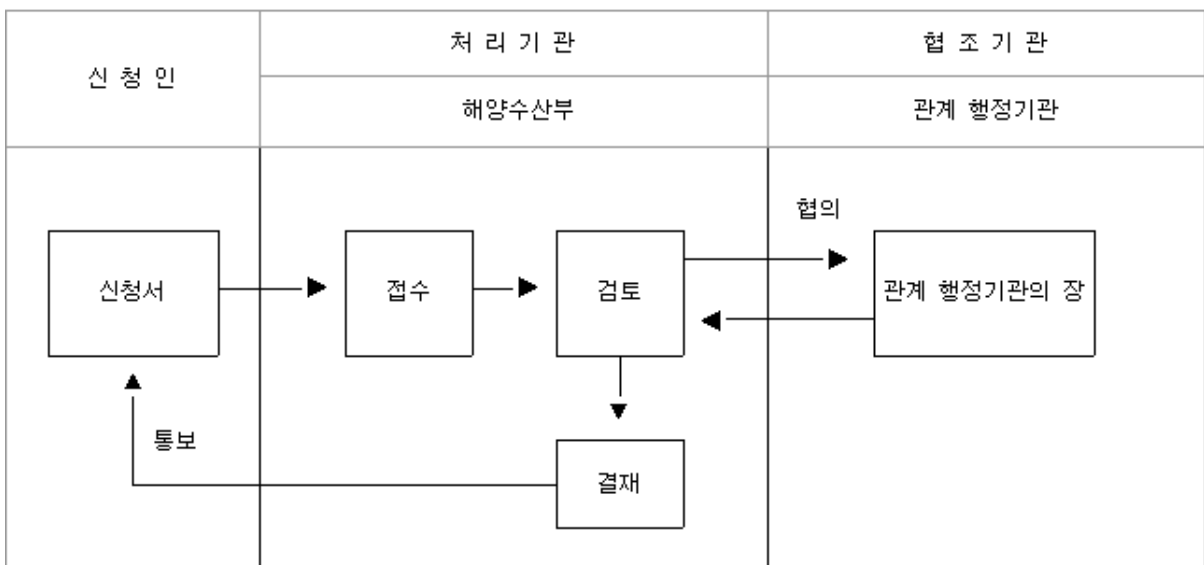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p>첨부서류</p>	<p>「항만법」 제60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p> <p>※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에는 「항만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척 25,000분의 1의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5.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검토 협의에 필요한 서류 7.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귀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8.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9. 「항만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0.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항만제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의 명칭	실시계획승인일
	사업구역의 위치 및 준공 면적	
	시설의 개요	
	총사업비 천원	시행기간

「항만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받고자 준공검사를 받고자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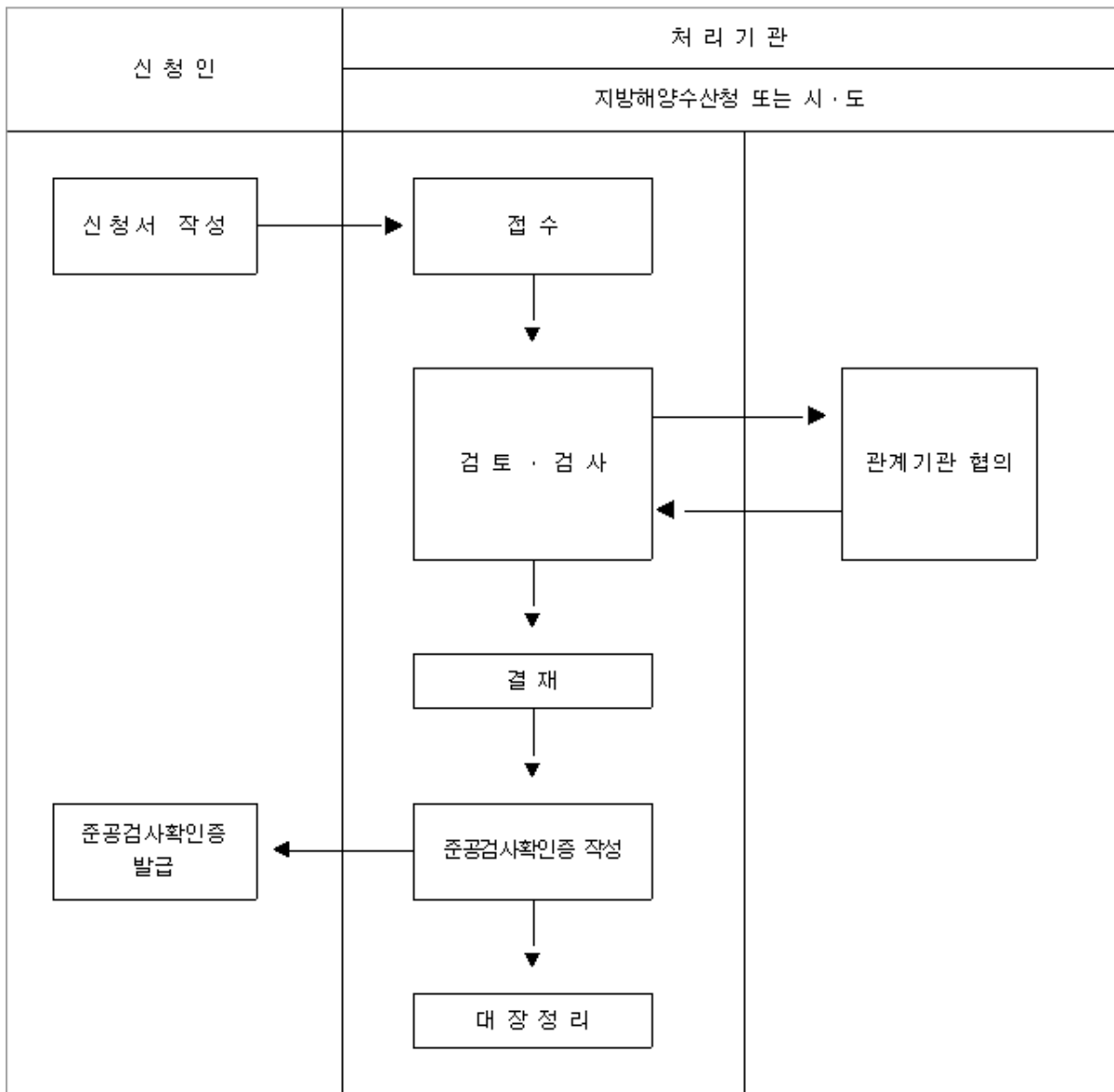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수수료 없음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확인사항	지적도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성 명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귀하가 시행한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항만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확인을 하고 본 증서를 교부합니다.

1. 사업명
2. 실시계획 승인일
3. 위치
4. 시행면적 m^2
5. 준공 연월일
6. 준공인가 사항(확정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직인

항만제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의 명칭			
소재지			
사업의 내용	허가 연월일	년	월 일
	사업 내용		
준공 전 사용대상시설			
준공 전 사용사유			
준공 전 사용기간			
전체공사의 준공예정일			

「항만법」 제61조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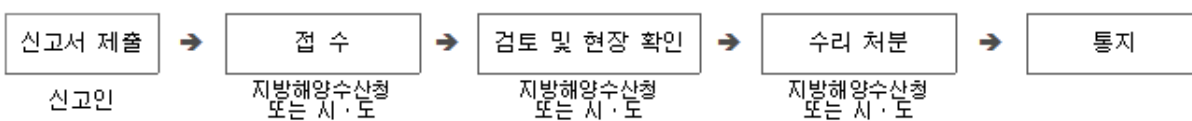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 ·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 호 행정처분 결과통지서	
사업시행자 (피허가자)	
주소	(전 화 번 호:)
행정처분 내용	
공사중지, 항만 시설 사용중지 기간	년 월 일 로부터 개월
행정처분 사유	
<p>「항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p>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display: inline-block; padding: 5px 15px; margin-left: 100px;"> 직인 </div>	

210mm×297mm[백상지 80g/㎡]

토지출입(일시사용) 통지서

출입 또는 사용 목적	
출입 또는 사용 기간	
제거 또는 변경을 필요로 하는 장애물의 종류	. 부터 (일간) . 까지

「항만법」 제 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8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출입(사용)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귀하

제 호

허 가 증

성 명

생년월일(남/녀)

주 소

위치 또는 장소

허가내용

기 간부터 까지

「항만법」 제75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작성 등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위 사람에게 토지에의 출입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앞면)

토지출입(일시사용)증		사진 (3.5cm × 3cm)
성명		
주소		
유효기간 부터 까지	(일간)
<p>위 사람은 「항만법」 제7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인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귀하</p>		

주의사항

1. 이 증표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항상 지녀야 합니다.
2. 이 증표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여야 합니다.
3. 이 증표는 대여하지 못합니다.
4. 이 증표를 잃었을 때에는 즉시 지방해양·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직무효입니다.

74mm × 52mm(인쇄용지(특급) 120g/㎡)

재결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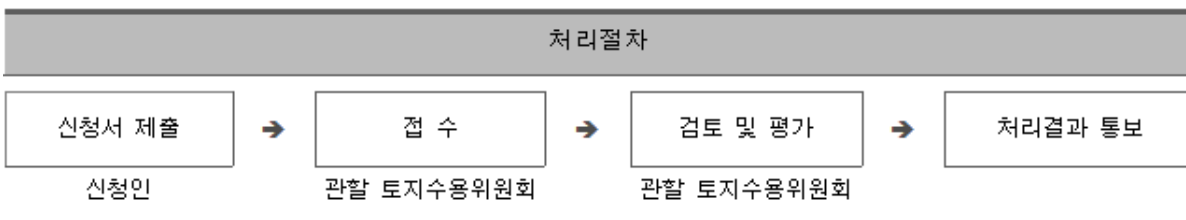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처분명	명 칭	
	소재지	
손실발생의 사실		
손실보상액		
재결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		
협의의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항만법」 제8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토지수용위원회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재결용품)]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 고 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 고 사 항

행위허가(신고)내용	<input type="checkbox"/> 건축물의 건축 <input type="checkbox"/> 인공구조물의 설치 <input type="checkbox"/> 토지의 형질변경 <input type="checkbox"/>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input type="checkbox"/>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input type="checkbox"/> 토지분할 <input type="checkbox"/>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위 치	
면 적 (㎡)	
근 거 법 령	
허 가 일 자	년 월 일 허가권자
공사(사업) 진행 사항	공사(사업) 진척도 %

「항만법」 제 8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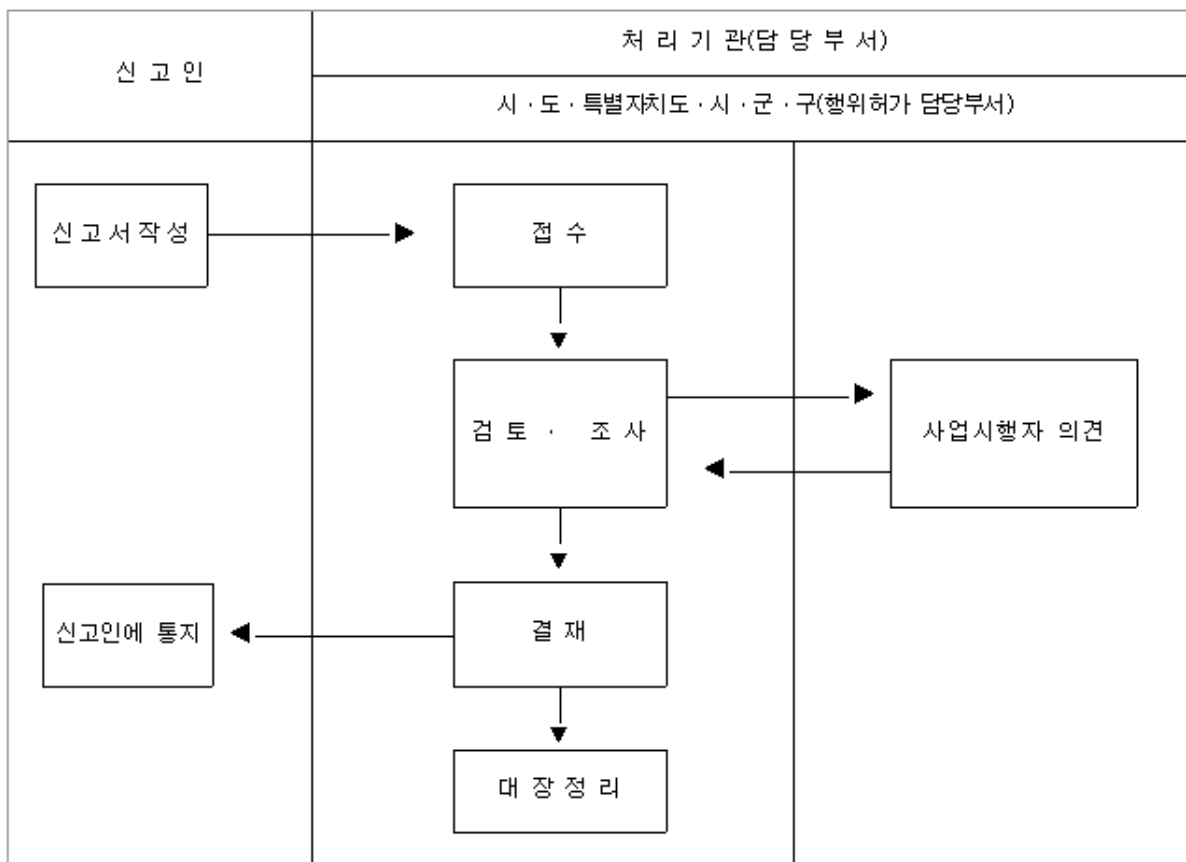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시행계획서 1부 2. 사업진행사항(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권리·의무이전 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소		
신청내용	허가(승인)일 및 근거		
	허가(승인)목적 및 개요		
	준공기간		
	공사공정률		
	양도 사유		

「항만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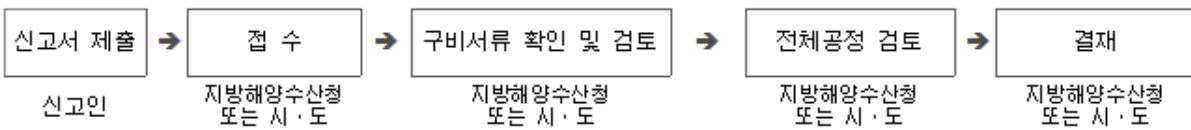
주소

지방해양수산청장
시 ·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주 소	
신청내용	주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임원 및 직원의 수	
	신청 이유	
	사업예정지역(항만명)	
	법인의 사업범위(종류)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5px;">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div>	

「항만법」 제8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관리법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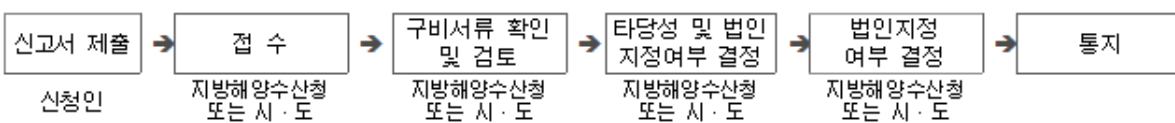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임원의 성명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화물의 경비 등에 대한 경비로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경비로 등의 산출근거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